



강북구의회  
GANGB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균 의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나서주길”

이용균 의원, “교통단속 공무원에 단속권한 부여해주길” 강조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이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펼쳤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강북구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3년 60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504만원, 2014년 79건에 648만원, 2015년 140건에 1,17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장애인편의 시설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노란색)’ 표지가 부



이용균 의원

착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있는 경우이고, 그 외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있다. 현재 강북구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면수가 공영주차장 54면, 민간주차장 844면 총 898면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4,8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사례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

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균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신고 및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고 장애인의 주차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이 부득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이 의원은 교통단속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장애인들에게 차량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줘야...

이 용 군 의원

(새정치/송천동, 삼각산동, 삼양동)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용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이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교통 단속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했다.

강북구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면수가 공영주차장 54면, 민간주차장 844면 총 898면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4830대이므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신고 및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용균 의원은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밖



▲ 이용균 의원.

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의 주차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이 부득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북구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60건에 과태료부과금액은 504만원, 2014년 79건에 648만 원, 2015년 140건에 1,17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면서, 이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

속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호를 위해 단속권한을 가진 단속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의 경우 단속 인력은 장애인 관련부서 직원 1명으로,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직접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신 일반 시민이나 장애인협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경우에는 단속인력이 없어 신고가 접수되어도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용균 의원은 “현재 교통단속 공무원은 강북구 내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단속하는 것보다 교통단속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량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은주 기자 jej1718@naver.com〉

◆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이용균 의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나서주길”

이용균 의원, “교통단속 공무원에 단속권한 부여해주길”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이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펼쳤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강북구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3년 60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504만원, 2014년 79건에 648만원, 2015년 140건에 1,17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장애인편의 시설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기능(장애인자동차표지-노란색)’ 표지가 부착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다.

그 외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있다.

현재 강북구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면수

가 공영주차장 54면, 민간주차장 844면 총 898면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기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4,8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사례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균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신고 및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고 장애인의 주차 권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이 부득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까지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이 의원은 교통단속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장애인들에게 차량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